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7가단522609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홍

4. D

변론 종결2019. 4. 9.

판결 선고2019. 6. 25.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685,587원 및 그 중 172,882,324원에 대하여는 2017. 11. 8.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7. 6. 15. 제211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D 사이에 2017. 7. 1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 D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7. 7. 14. 접수 제25160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8. 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7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8. 6.(이후 보증기한은 2017. 8. 4.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6. 1.이후부터 연 12%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7. 6.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1. 8. 중소기업은행에 172,882,3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비용으로 1,896,213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보증료는 907,050원이다.

다. 피고 회사, C, D 사이의 근저당권이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15. 채권최고액 8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피고 회사는 2017. 7.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같은 날 계약양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B,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 172,882,324원, 법적절차비용 1,896,213원, 추가보증료 907,050원 합계 175,685,58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2,882,324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7.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8. 11.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7. 7. 14.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17. 6. 1.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7. 11. 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재산상태 갑 제12, 14, 15, 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충북 괴산군 F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충북 음성군 G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충북 음성군 H 공장용지 및 공장 소재 기계, 기구가 있었고, 그 합계액은 약 44억 원에 이르는 사실, 반면 피고 회사는 약 5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 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C, D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여부

- 1)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 2) 사해해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채권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D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7. 7. 14. 접수 제25160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이유영

별지